

4. 개정조례(안):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필요없음  
 ※따로붙임: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

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를 제6조 내지 제13조로 각각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전의 제5조) 제3항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u>세무1과장</u> ,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신설)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u>세무관리과장</u> ,..... .....
제5조(회의) ①~②(생략)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
제6조~제12조 (생략)	제6조(회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u>부결된 것으로 본다</u> . 제7조~제13조(현행 제6조~제12조와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9월 9일 마

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6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 9. 13.)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재무과장 조병하

가. 개정이유

마포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에 의해 병행 납부토록하여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절감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납부조항 신설(안 제1조의2)
-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수입증지 소인증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 소인 제외 조항 신설(안 제4조)
- 계기관리 공무원 및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장부의 비치 및 검사조항 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수입증지에 의해 납부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것으로 요금계기 자동복합인증기에 의한 사무자동화로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수입증지 판매인은 지정되어 있는가?
- 답변요지(조병하 재무과장):서울시상조회 직원 2명이 우리구에서 증지판매를 하고 있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증지판매 수수료는 얼마인가?
- 답변요지(조병하 재무과장):판매액의 3%로 약 9억원의 증지판매를 하여 2,70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증지판매원은 공무원 신분인가?
- 답변요지(조병하 재무과장):시 상조회에

서 채용하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 5. 토론요지:없음
- 6. 심사결과: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 8. 기타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1996. 9. .

제출자: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에 의해 병행 납부토록하여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절감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납부 조항 신설(안 제1조의2)
-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수입증지 소인증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 소인 제외 조항 신설(안 제4조)
- 계기관리 공무원 및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장부의 비치 및 검사조항 개정(안 제9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제5069호) 제15조

4. 개정조례(안):따로붙임.

5. 예산조치필요성:필요

※따로붙임: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 ①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 지정”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공무원, 판매인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

항중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재무국 재무과에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두며”를 “수입증지관리와 계기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을 두며”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의 지정, 수입증지의 관리와 판매 및 계기관리와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의 책임”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며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판매인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그 수불과 사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조의2(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입증지요금</li> <li>2. 발행기관명</li> <li>3. 계기고유번호</li> </ol> <p>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입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5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 지정)

①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개무국 재무과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울 둘 수 있다.

②~③(생략)

④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 ①수입

증지 취급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①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판매인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조의2(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공무원, 판매인 지정) ①수입증지관리와 계기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을 두며

②~③(현행과 같음)

④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의 지정, 수입증지의 관리와 판매 및 계기관리와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의 책임) ①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

관리공무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며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9조(장부의 비치 및 검사) ①수입증지취

급공무원과 판매인은 수입증지 수불부를,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그 수불과 사용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4.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1996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제4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6. 9. 14.)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박흥기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며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등 위촉에 관한